

# 심판 규정

1990. 1. 1. 개 정

2004. 9. 17. 개 정

대한축구협회



## 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제2조 (적용 범위)

## 제2장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

제3조 (구성 및 임기)

제4조 (기능)

제5조 (위원장의 직무)

제6조 (부위원장의 직무)

제7조 (회의)

제8조 (소위원회의 구성)

## 제3장 심판원의 구분 및 교육

제9조 (심판원의 정의)

제10조 (심판원의 구분)

제11조 (심판원의 관장 경기)

제12조 (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)

제13조 (4급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)

제14조 (3급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)

제15조 (2급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)

제16조 (1급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)

제17조 (국제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)

제18조 (특별 교육 및 자격부여)

제19조 (보수 교육)

제20조 (심판강사의 구분 및 직무)

제21조 (심판 강사의 자격 요건)

## **제4장 심판원의 운영 등**

- 제22조 (심판원의 등록)
- 제23조 (심판원의 배정)
- 제24조 (심판원의 권한)
- 제25조 (심판원의 의무)
- 제26조 (심판원의 활동정지)
- 제27조 (심판원 등의 상벌)
- 제28조 (심판원의 자격소멸)
- 제29조 (심판감독관의 운용)
- 제30조 (심판원의 수당)
- 제31조 (심판원의 보호)

## **부칙**

### **별지 1 체력측정 기준표**

### **별지 2 국제심판 선발기준**

### **별지 3 심판원의 구분 및 교육**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, 심판원의 교육과 양성, 배정 및 관리 등 심판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 제2조 (적용 범위)

본 규정은 심판위원회 및 심판원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.

## 제2장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

### 제3조 (구성 및 임기)

① 협회 정관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심판위원회(이하 '본 위원회'라 한다.)를 조직 하되, 그 구성 및 구성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#### 1. 구성

- 가. 위원장 1인
- 나. 부위원장 약간인(필요시 상근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)
- 다. 위원 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한 15인 이내

#### 2. 임기

- 가. 위원장 이사의 임기에 준함
- 나. 부위원장 및 위원 1년

② 협회에 등록된 팀의 지도자는 심판위원 또는 감독관을 겸임할 수 없다.

## 제4조 (기능)

협회 정관 제 32조에 의거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경기 규칙의 해석과 적용 등 공정한 심판을 위한 책임 및 감독
2. 심판원, 심판위원, 심판감독관, 심판강사 등의 활동관리
3. 심판의 교육, 등급사정, 양성 및 유지
4. 심판감독관과 심판원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고과평정 결과보고
5. 국제심판원의 자격 심사 및 추천
6. 심판원의 상벌 건의

## 제5조 (위원장의 직무)

- ①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, 심판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- ② 본 위원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.
- ③ 심판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다.

## 제6조 (부위원장의 직무)

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상근부위원장이 대행한다. 단, 상근부위원장 유고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.

## 제7조 (회의)

- ① 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② 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## 제8조 (소위원회의 구성)

- ① 본 위원회는 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# 1. 배정 소위원회

가. 직무 : 각종 대회의 심판원 배정

나. 인원 : 본 위원회 위원 2인~3인

2. 교육 소위원회

- 가. 직무 : 양성교육, 보수교육 등 심판 교육에 필요한 내용과 계획 수립
- 나. 인원 : 본 위원회 위원 또는, 중앙 강사로 구성된 3인~5인

3. 평가 소위원회

- 가. 직무 : 심판 활동과 관련한 보고서 검토 및 대안 제시
- 나. 인원 : 본 위원회 위원 3인~5인

② 소위원회의 위원겸직은 원칙적으로 금한다.

## 제3장 심판원의 구분 및 교육

### 제9조 (심판원의 정의)

심판원(Referee)이라 함은 협회가 발급하는 심판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심판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.

### 제10조 (심판원의 구분)

- ① 심판원은 협회 발급 자격증 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된다. 단, 국제 심판은 1급 심판 중에서 본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국제축구연맹(FIFA)으로부터 승인을 득한자로 한다.
  - 1. 4급 심판
  - 2. 3급 심판
  - 3. 2급 심판
  - 4. 1급 심판
  - 5. 국제 심판
- ② 심판원은 경기 중 역할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되며 그 직능은 경기규칙5(주심), 6(부심) 및 관련 세칙에 의한다.

1. 주 심 (Referee)
2. 부 심 (Assistant Referee)
3. 대기심 (Fourth Official)

③ 심판원의 구분 및 자격부여에 대한 세칙은 별지3으로 규정한다.

### 제11조 (심판원의 관장 경기)

- ① 심판원의 자격증 등급에 따라 관장할 수 있는 경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1. 4급 심판 : 초등부 및 K3 이하 클럽 경기의 주, 부심
  2. 3급 심판 : 중등부 경기의 부심
  3. 2급 심판 : 대학부, 고등부 경기의 부심
  4. 1급 심판 : 국내 경기의 주, 부심 및 위임받은 국제 경기
  5. 국제 심판 : 국제 경기의 주심 또는 부심 및 국내 경기의 주, 부심
- ② 상위급 심판은 하위급 경기의 주,부심을 할 수 있다.

### 제12조 (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)

- ①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에 대한 모든 권한은 협회에 있고 필요시 2급이하는 시도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### 제13조 (4급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)

4급 심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교육 및 자격평가를 거쳐야 한다.

1. 자격요건
  - 가. 나이 : 만 12세 이상,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
  - 나. 시력 : 교정시력 좌우 1.0 이상
2. 교육내용 및 기간
  - 가. 이론 : 16~18시간 이상
  - 나. 실기 : 1일 이상



3. 자격평가 : 필기 및 체력평가

4. 자격증 부여 : 필기평가 60% 이상을 취득하고, 체력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 
4급 심판 자격증 부여 (체력평가 기준: 별지 1 참조)

#### 제14조 (3급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)

3급 심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교육 및 자격평가를 거쳐야 한다.

1. 자격요건

가. 만 16세 이상,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

나. 시력 : 교정시력 좌우 1.0 이상

2. 교육내용 및 기간

가. 이론 : 30시간 이상

나. 실기 : 3일 이상

3. 자격평가 : 실기, 필기 및 체력평가

4. 자격증 부여 : 실기 및 필기평가 각각 60% 이상을 취득하고, 체력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3급 심판 자격증 부여 (체력평가 기준: 별지 1 참조)

5. 4급자격증 소유자로 1년 이상 경과, 20경기이상 주,부심 경력이 있는 자는 실기위주 평가(60%)로 자격증 부여

#### 제15조 (2급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)

2급 심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교육 및 자격평가를 거쳐야 한다.

1. 자격요건 : 3급 심판원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총30경기 이상 주,부심 경력이 있는 자

2. 교육내용 및 기간 : 실기위주 5일 이상

3. 자격평가 : 실기, 필기 및 체력평가

4. 자격증 부여 : 실기 및 필기평가 각각 70% 이상을 취득하고, 체력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2급 심판 자격증 부여 (체력평가 기준: 별지 1 참조)

## 제16조 (1급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)

1급 심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교육 및 자격평가를 거쳐야한다.

1. 자격요건 : 2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총 50경기 이상 주,부심 경력이 있고 협회가 지정하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자
2. 교육내용 및 기간 : 실기위주 5일 이상
3. 자격평가 : 실기, 필기, 체력평가
4. 자격증 부여 : 실기 및 필기평가 각각 80% 이상을 취득하고, 체력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1급 심판 자격증 부여 (체력평가 기준: 별지 1 참조)

## 제17조 (국제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)

①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교육 및 자격평가를 거쳐야 한다.

② 단, 여자 국제심판은 별지2 국제심판 선발기준에 따른다.

1. 자격요건
  - 가. 1급 심판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자
  - 나. 추천 당해 년도 대학부이상 주,부심으로 활동한 자
  - 다. 만 39세 이하인 자
  - 라. 협회가 지정하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자
  - 마. 국제심판으로서 품행을 갖춘 자
2. 평가 과목 : 실기, 영어 및 체력
3. 자격증 부여 : 실기평가 80% 이상, 영어평가 회화 및 필기 각 40% 이상, 체력평가는 별지 2 국제심판 선발기준에 준한다.

## 제18조 (특별 교육 및 자격부여)

협회 승인 시 다음 각호의 특별 교육과 자격평가를 거쳐 2급 심판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다.

1. 자격요건 :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시
  - 가. 국가대표 선수로서 A매치 1회 이상 출전한 자
  - 나. K1 리그 선수로서 공식 경기 10회 이상 출전한 자
  - 다. K2 리그 또는, 대학 선수로서 공식 경기 30회 이상 출전한 자

2. 교육 내용 : 이론 및 실기
3. 교육 기간 : 30시간 이상
4. 자격평가 : 실기, 필기 및 체력 평가
5. 자격증 부여 : 각 급수에 해당하는 (실기, 필기평가는 80% 이상, 체력평가는 별지 1 참조) 합격점을 통과한 자에게 2급 심판 자격증 부여

### 제19조 (보수 교육)

심판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해당 자격부여 기관은 매년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한다. 연간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.

### 제20조 (심판강사의 구분 및 직무)

심판원의 교육을 위하여 심판강사를 두며 심판강사는 중앙강사와 지방강사로 구분 각각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중앙강사
  - 가. 전국 규모의 심판원 교육
  - 나. 지방 심판원 양성 교육 시 초빙 강사
  - 다. 경기 규칙 등의 제개정 연구 및 제안
  - 라. 각종 대회 종료 후 심판 평가회의 개최 및 심판원 발전 방안 제시
2. 지방강사
  - 가. 소속 시도협회 주최 심판원 교육
  - 나. 지방 대회 종료 후 심판 평가회의 개최 및 심판원 발전 방안 제시
  - 다. 본 위원회에 심판 발전 방안 건의
  - 라. 매년 본 위원회 개최 보수 교육 참가

### 제21조 (심판 강사의 자격 요건)

심판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중앙강사 :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본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자
  - 가. 1급 심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
  - 나. 국제 심판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, FIFA 또는, AFC 심판강사 코스를 수료한 자
  - 다. 기타 FIFA가 인정하는 국제 심판강사 코스를 수료한 자

2. 지방강사 :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시도 협회의 추천과 협회의 승인을 거친 자
- 가. 1급 심판원으로 6년 이상 활동한 자
  - 나. 국제 심판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

## 제4장 심판원의 운영 등

### 제22조 (심판원의 등록)

- ① 자격증이 부여된 심판원이라 할지라도 활동을 위하여는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- ② 2급 이하 심판원 등록은 해당 시,도협회에, 1급 이상은 본 협회에 등록한다. 시, 도협회에 등록된 심판원은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한다.
- ③ 등록시기 : 매년 2월과 6~7월에 실시하며 체력측정을 병행한다. 자격증 취득자는 취득 즉시 등록 가능하다.
- ④ 등록양식, 절차등 등록에 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.

### 제23조 (심판원의 배정)

- ① 심판원의 배정은 본 위원회 결정에 의한다.
- ② 심판원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심판원 자격을 받을 수 있다.
- ③ 프로리그에 활동하는 심판원은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협회 이사회가 결정한다.

### 제24조 (심판원의 권한)

심판원은 경기 중 경기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권을 갖는다.

## 제25조 (심판원의 의무)

심판원은 판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
1. 심판으로서의 권위와 품위 및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
2. 경기 중 긴급 상황 발생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할 의무
3.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기 종료 후 별도의 사건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
4.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

## 제26조 (심판원의 활동정지)

활동정지라 함은 심판원의 주,부심등 활동의 일시적인 정지를 말하며 본 위원회의 건의에 의거, 이사회가 결정한다.

## 제27조 (심판원 등의 상벌)

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본 위원회 구성원 및 심판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.

1. 포상 대상 : 심판원, 심판 강사, 기타 심판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공로가 크고 타의 모범이 된 자
2. 징계 대상

(상벌위원회 건의)

- 가. 경기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자
- 나. 승부를 조작하였거나 조작을 교사한 자

(자체 징계 건의)

- 가. 경기 규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판정을 한 자
- 나. 본 위원회의 심판배정을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
- 다. 기타 타인의 비난을 받을 만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

## 제28조 (심판원의 자격소멸)

자격소멸이라 함은 징계 등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, 본인의 자격증 반납, 또는 개인적인 유고 등으로 심판의 자격이 영구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, 자격의 소멸은 본 위원회의 건의에 의거 이사회가 결정한다.

## 제29조 (심판감독관의 운용)

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판감독관을 운용한다.

1. 목적 : 심판원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관리
2. 자격 요건 : 심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
3. 직무
  - 가. 경기와 관련된 심판원의 심판수행 능력 평가 및 평가 보고서 제출
  - 나. 심판 관련사고 발생시 사건에 대한 서면 보고서 제출
  - 다. 대회 기간 중 배정된 심판원에 대한 건전한 관리
4. 심판감독관의 평가 항목
  -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.
  - 가. 심판관정의 정확성과 일관성
  - 나. 심판의 체력, 위치 및 움직임
  - 다. 기술 지역의 관리
  - 라. 선수 교체 절차
  - 마. 주심, 부심 및 대기심의 상호 협력
  - 바. 기타 관정 및 경기 운영의 공정성
5. 심판감독관 보고서는 경기 후, 즉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30조 (심판원의 수당)

심판원의 수당은 본 위원회 건의에 의해 이사회가 결정한다.

## 제31조 (심판원의 보호)

심판원은 심판활동 수행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장 내,외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는다.

1. 경기장 도착시간부터 출발시간까지 어떠한 신체적, 정신적 공격으로부터의 보호
2. 경기단체 또는, 대회 주최 기관이 제기한 징계 및 징계 해제 심사 소청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,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언 및 항변할 권리

### 1. 규정의 채택과 효력

- (1) 본 규정은 2004년 9월 17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.
- (2)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### 2.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

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경우는 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.

### 체력측정 기준표

순서	종 목	구분	통 과 기 준	
			3급/2급/1급	4급 심판
1	12분 달리기	남	2700m 이상	2400m 이상
		여	2400m 이상	2000m 이상
2	50m 달리기	남	7.5초 이내	8초 이내
		여	9초 이내	10초 이내
3	200m 달리기	남	32초 이내	35초 이내
		여	40초 이내	44초 이내
4	50m 달리기	남	7.5초 이내	8초 이내
		여	9초 이내	10초 이내
5	200m 달리기	남	32초 이내	35초 이내
		여	40초 이내	44초 이내



[별지 2]

## 국제심판 선발기준

1. 연령 - 당해연도 만 39세 이하인 자
2. 신체검사 합격자
  - 2-1. 신체검사에 적격 판정을 받은 자
  - 2-2. 1항에 의거 비정상적인 경우 실격처리를 한다.
3. 체력평가
  - 3-1. FIFA의 체력측정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되 한 종목이라도 미달 시에는 실격처리 한다.
  - 3-2. 신규응시자는 12분 달리기에서 반드시 3,000m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국제심판은 반드시 2,800m 이상이어야 한다.  
단, 여자는 신규 2,600m이상, 기존 2,500m 이상이어야 한다.
  - 3-3. 선발기간 중 국외 파견자는 파견일자를 감안하여 별도로 실시한다.
  - 3-4. 체력검사 종목 및 기준표

순서	종목	구분	통과기준			
			주심		부심	
			기존	신규	기존	신규
1	12분 달리기	남	2800m 이상	3000m 이상	2800m 이상	3000m 이상
		여	2500m 이상	2600m 이상	2500m 이상	2600m 이상
2	50m 달리기	남	7.5초 이내		7.5초 이내	
		여	9초 이내		9초 이내	
3	200m 달리기	남	32초 이내		/	
		여	40초 이내			
4	50m 달리기	남	7.5초 이내			
		여	9초 이내			
5	200m 달리기	남	32초 이내			
		여	40초 이내			

### 3-5. 12분 달리기 배점 기준표

종목	거리	배점	거리	배점
12분 달리기	3,400m 이상	10점	3,050m~3,099m	6.5점
	3,350m~3,399m	9.5점	3,000m~3,049m	6.0점
	3,300m~3,349m	9.0점	2,950m~2,999m	5.5점
	3,250m~3,299m	8.5점	2,900m~2,949m	5.0점
	3,200m~3,149m	8.0점	2,850m~2,899m	4.5점
	3,150m~3,199m	7.5점	2,800m~2,849m	4.0점
	3,100m~3,149m	7.0점		

#### 4. 영어평가

4-1. 회화평가

4-2. 필기평가

#### 5. 실기평가

5-1. 실기평가는 (주,부심 구분)국제심판평가위원의 평점에 의거 배점 처리한다.  
(실기평가는 80% 이상이어야 한다)

5-2. 국제심판평가위원은 심판위원장이 선임한다.

5-3.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장이 겸임한다.

#### 6. 평가항목별 합격기준

구분	실기	영어		체력
		회화	필기	
배점(만점기준)	70점	10점	10점	10점
합 계	100점			

※ 영어평가 각 4점미만 과락

7. 동점자 처리

7-1. 동점자 발생시 ①순위 실기, ②순위 체력, ③순위 영어회화 순으로 결정한다.

7-2. 위의 경우에도 동점시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.

8. 추천 배제조건 - 기존의 국제심판 중 다음의 경우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.

국제심판 주,부심중 당해연도 주,부심에 배정되지 못하였거나(단, 1년차 제외)  
또는 AFC/FIFA로부터 현저히 낮게 평가된 자

## 심판원의 구분 및 교육

구분	활동범위		교육종류	교육과정
4급	상위급 심판은 하위급 경기의 주·부심을 할 수 있다.	초등부 및 K3이하 클럽경기	양성교육	가.이론교육:16-18시간 이수 나.필기평가(60% 이상) 다.체력측정 라.실기교육
3급		중등부 경기부심	양성교육 (승급)	가. 이론교육 : 30시간 이수 나. 필기평가(60% 이상) 다. 체력측정 라. 실기교육
2급		고등부, 대학부 경기 부심	보수교육 (승급)	가. 이론교육 나. 필기평가(70% 이상) 다. 체력측정 라. 실기교육
1급		국내경기의 주·부심 및 위임받은 국제 경기	보수교육 (승급)	가. 이론교육 나. 필기평가(80% 이상) 다. 체력측정 라. 실기교육
국제		국제경기의 주·부심 및 국내경기의 주·부심	보수교육	가. 이론교육 나. 필기평가 다. 체력측정 라. 실기교육 (별지2 국제심판 선발기준 참조)

대 상	자격증 발급
가. 나이 : 12-40세 이하 나. 시력 : 교정시력 1.0이상	대한축구협회 (필요시 시도협회위임)
가. 나이 : 16-40세 이하 나. 시력 : 교정시력 1.0이상 다. 승급대상자 : 4급 심판으로 1년 이상 경과 및 20경기 이상 주,부심 활동자	대한축구협회 (필요시 시도협회위임)
가. 3급 심판으로 2년 이상 경과자 나. 3급 심판으로 총 30경기 이상 주,부심 경력자 다. 특별교육 대상자 : 국가대표 선수로서 A매치 1회 이상, K1리그 선수로서 공식경기 10회 이상, K2리그 또는 대학선수로서 공식경기 30회 이상, 출전한 자	대한축구협회 (필요시 시도협회위임)
가. 2급 심판으로 2년 이상 경과자 나. 2급 심판으로 총 50경기 이상 주,부심 활동자	대한축구협회
가. 1급 심판으로 2년 이상 경과자 나. 추천 당해연도 대학/일반 이상 주,부심 활동자	대한축구협회 (FIFA 승인)